

瑞山市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 
**檢 討 報 告**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8. 20

3. 提案理由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('96.7.1)되어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상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4. 主要骨子

-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중에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및 제6조를, 지역보건법 제2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개정
- 동조례 제3조중 법 제6조를 법 제9조로, 동조례 제6조중 법 제8조를 법 제14조로 개정토록 함.

## 5.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(안)은 현행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에 제정 근거가 되는 법령 명칭과 조항이 개정되어 관계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개정조례(안)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